

교직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알림

2019. 5. 22.(수)



교무처 교직부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교육부고시 제2016-106호)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⑨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 각 호의 기관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유치원알리미]에서 유치원을 선택하여 조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 인정 불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교알리미]에서 조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2017년 7월 현황)

광저우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까오송한국국제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동경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모스크바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방콕한국국제학교, 북경한국국제학교, 브라질한국학교, 상해한국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소주한국학교,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아르헨티나한국학교, 연대한국학교, 연변한국국제학교, 오사카건국학교, 오사카금강학교,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쟈다한국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카이로한국학교, 타이베이한국학교, 테헤란한국학교, 파라과이한국학교,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경일중·경영정보고등학교, 성지중·고등학교, 신동신중·정보산업고등학교,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정암미용고등학교, 진형중·고등학교, 청량정보고등학교, 청암중·고등학교, 한국예술고등학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한림초·중·실업고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서현초등학교(이상 서울지역 소재), 계명고등학교, 안양상업고등학교,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부천실업고등학교, 고양실업고등학교, 경기미용예술고등학교, 진영중학교, 진영초등학교(이상 경기지역 소재), 에화여자중·고등학교, 남인천중·고등학교,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이상 인천지역 소재), 한국 YMCA원주중·고등학교(강원지역), 대전예지중·고등학교(대전지역), 예일미용고등학교(충북지역), 국제금융고등학교, 부산경호고등학교, 부산골프고등학교, 부산미용고등학교, 부경보건고등학교, 부산예원고등학교, 부산조리고등학교(이상 부산지역 소재),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이상 대구지역 소재),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경북지역), 경남미용고등학교,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 경남보건고등학교(이상 경남지역 소재),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전주금암고등학교, 진북고등학교, 군산평화중·고등학교, 백제고등학교, 인화초·중·고등학교, 남일초·중·고등학교(이상 전북지역 소재),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홍지중·고등학교(이상 전남지역 소재)

㉕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확인

㉖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등이 비영리 기관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조회]에서도 교육봉사활동 가능

○ 문의: 교무처 교직부(062-530-5922)